



## 공과금 요금고지 정책

주제/제목 :	정책 번호:	승인일:
연체에 대한 주거용 공급 중단 정책		

### 목적

이 정책은 고지, 연체료 부과 및 공급 중단 등 연체 계정 수금을 위한 로너트파크 시 공과금의 행정 조치를 열거합니다. 이 정책은 시 웹 사이트에서 일반인에게 공개됩니다. 이 정책의 조건에 따라 연체로 인해 수도 공급이 중단되는 것을 피할 수 있는 옵션을 논의하시려면 전화 (707) 585-6750 으로 공과금부서에 연락하십시오.

### 정책:

#### 연체 계좌:

모든 계정에 대한 공과금 고지서는 보낸 후 21 일이면 연체입니다.

#### 1. 소액 잔액 계좌 :

고지서의 \$20 이하의 모든 잔액은 연체료가 부과되거나 추가 징수 조치 없이 다음 고지기간으로 이월되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2. 연체료:

고객에게 고지서를 보낸 후 21 일 이상 미지급 잔액에 대해서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마감일과 연체료가 연체통지서에 눈에 잘 띄게 표시됩니다.

#### 3. 연체료 면제 :

고객의 요청에 따라, 정상을 참작할 만한 상황이 발생하고 고객이 지난 12 개월 동안 미납금액에 대해 연체료를 면제받은 적이 없었던 경우 시는 연체료를 면제합니다.

#### 4. 서면 중단 통지:

시는 고객이 최소 60 일 체납될 때까지는 체납 때문에 수도 공급을 중단하면 안 됩니다.

B. 고객에 통지: 시는 체납으로 수도 공급이 중단되기 업 일 기준으로 최소한 7 일(업무 일 기준)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서면 통지는 계정에 지정된 우편 주소로 우송됩니다. 우편 주소와



## 공과금 요금고지 정책

주제/제목 :	정책 번호:	승인일:
연체에 대한 주거용 공급 중단 정책		

상수도 서비스가 제공되는 곳의 주소가 다른 경우, 공급주소의 "입주자" 앞으로 이차 고지서가 우송됩니다. 서면 중단 통지서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 고객의 이름과 주소
- 연체 금액
- 공급 중단을 피하기 위해 납부를 하거나 납부 약정을 해야 하는 날짜
- 분할납부 계획 신청 절차에 대한 설명
- 요금고지서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에 대한 설명
- 시 공과금부서 전화 번호 및 연체 계정 수금 및 서비스 재 연결에 관한 정책 및 기타 모든 시 정책에 대한 웹 링크.

c. 집주인이 보유한 계좌에 대한 입주자 통지: 단락 B 에 따른 고객통지 외에도, 그 건물이 단독 주택 주거지, 다세대 주거 구조물, 모빌 홈 공원 또는 노동 수용소의 영구 주거 구조의 거주자에게 개별적으로 계량되는 주거용 수도 공급이고, 그 주거지, 구조물, 또는 공원의 주인, 관리자 또는 운영자가 기록 상의 고객일 때, 시는 계정이 체납될 때 해지 최소한 10 일 전에 공급이 중단될 것이라는 사실을 서면 통지를 통해 거주자에게 알리기 위해 모든 성실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서면 통지는 또한 입주자에게 연체 계정에 밀린 납부금을 납부하라는 요청을 받지 않고 공급에 대한 요금고지를 받는 고객이 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 5. 전화 연락 :

위의 서면 통지 외에도 시는 요금연체로 인해 수도 공급이 중단되기 최소 48 시간 전에 전화로 고객에게 알리기 위해 합리적이고 성실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시 직원은 대안적 납부 약정, 납부 연기, 최소 납부, 연체금 분할 납부 요청 절차, 고지서서 검토 청원 및 이의 제기 등을 제한없이 포함하여 연체로 인한 주거용 수도공급 중단을 피할 수 있는 모든 옵션에 대해 논의할 것을 제안해야 합니다. 시에서는 고객이 최신 상태로 유지하지 않은 전화 연락처 정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공과금 요금고지 정책

주제/제목 :	정책 번호:	승인일:
연체에 대한 주거용 공급 중단 정책		

제 4 항에 따른 서면 통지가 우편으로 배달 불가로 반송되고, 시가 전화로 거주지에 사는 고객 또는 성인과 연락할 수 없는 경우, 시는 공급받는 주소를 방문해서 연체로 인한 주거용 공급 중단 예정 통지와 이 정책의 사본을 눈에 잘 띄는 곳에 두도록 성실히 노력해야 합니다.

### 6. 대안적 납부 방식:

정상적인 납부기일까지 수도요금 납부를 할 수 없는 고객은 추가 요금 또는 서비스 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대안적 납부 방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시는 이 요청에 관련된 모든 상황을 고려하고 납부 방식이 적절한 지 결정합니다. 연체로 인한 중단을 피하려는 사람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시는 연체로 인해 주거용 수도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습니다.

#### 가. 주치의의 인증

서비스 중단이 상수도 서비스가 제공되는 장소 거주자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임을 인증하는 1 차 진료 제공자 (일반의, 산부인과 의사, 소아과 의사, 가정의, 의사, 1 차 진료 클리닉, 병원 또는 외래 환자 클리닉)의 인증을 제공합니다.

#### 나. 저소득 자격

고객이 CalWORKs, CalFresh, 일반 부조, Medi-Cal, 보충 안전 소득/주 보충 보조금 프로그램, 또는 여성, 유아 및 아동을 위한 캘리포니아 특별 보충 영양 프로그램을 현재 수령하고 있고 고객이 가구의 연간 소득이 연방 빈곤 수준의 200% 미만임을 보입니다.

#### 다. 공과금 분할 상환 계획 계약

모든 연체료에 대한 지불 약정에 동의합니다. 다음 고지 기간으로 연장되는 납부방식은 분할 계획으로 간주되며 서면으로 고객이 서명해야 합니다.

- 분할납부 계획은 원래 요금고지서의 날짜로부터 12 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고객이 정한 기간 동안 연체 잔액을 분할 납부합니다.
- 분할 납부금은 고객의 일반 요금고지서에 합산되며 그 납부기한이 적용됩니다.
- 고객은 분할 상환 계획 조건을 준수해야 하며 이후의 각 고지 기간의 요금을 납기일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 공과금 요금고지 정책

주제/제목 :	정책 번호:	승인일:
연체에 대한 주거용 공급 중단 정책		

- 고객은 할부 상환 계획에 따라 연체료를 지불하면서 후속 체납요금에 대해 추가 할부 상환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7. 분할 납부계획 요건을 준수하지 않거나 분할 납부 계획 중에 새로운 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

승인된 분할납부 계획의 조건을 준수하지 않으면 서면으로 공급 중단 통지서가 발급됩니다. 또한 승인된 분할납부 계획 기간 동안 추가적인 수도료가 60 일 동안 연체되면 서면으로 공급중단 통지를 받게 됩니다. 공급중단 통지는 공급중단일에서 영업일 기준 5 일 이전에 그 곳에 전달되는 문에 걸어 두는 통지서 형태입니다. 주거용 수도공급은 공급중단 통지를 걸어 둔 (영업일 기준) 5 일 후에 중단됩니다.

**8. 공급중단 기일 :**

모든 연체된 수도료 및 관련 수수료는 서면 공급중단 통지서에 명시된 날의 영업 종료시까지 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9. 수도공급 복원:**

미터기가 꺼져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지서 시스템에 복원하기 위해 고객에게 공급 복구료가 청구됩니다. 체납으로 인해 중단된 수도공급을 복원하거나 계속하려면 고객은 재개료 등 모든 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시는 가능한한 빨리 서비스를 재개하려고 노력할 것이나 최소한 공급중지에 따른 연체액 및 연체료를 지불한 후 최소한 다음 영업일이 끝나기 전에 수도공급을 복원합니다. 시 직원 이외의 사람이 복원하거나 시의 승인을 받지 않고 복원하는 경우 벌금 또는 추가 요금이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의 무단 복원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손해는 고객의 책임입니다.

CalWORKs, CalFresh, 일반 지원, Medi-Cal, 보조 보안 소득/주 보충 보조 프로그램 또는 여성, 유아 및 어린이를 위한 캘리포니아 특별 보조 영양 프로그램, PG & E CARE 를 현재 수령하고 있거나 또는 연간 소득이 연방 빈곤 수준의 200 퍼센트 미만인 고객의 경우, 복원료는 \$ 50 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공과금 요금고지 정책

주제/제목 :	정책 번호:	승인일:
연체에 대한 주거용 공급 중단 정책		

### 10. 업무 시간 후 서비스 복원: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5 시 이후, 주말 또는 공휴일에 복원된 서비스에는 업무시간 후 복원 요금이 부과됩니다. 고객에게 업무 시간 후 복원 요금에 대해 안내하고 고객이 요금을 인정하고 업무 시간 후 복원 요금을 지불하기 위해 다음 영업일 오전 9 시까 지 시의 요금고지 부서에 연락하기로 동의하지 않는 한 수도공급은 정규 업무 시간 이후에는 복원되지 않습니다. 연체 시 부과되는 위약금 외에 업무 시간 후 복원료가 부과됩니다. 수도공급 요청에 답변하는 시의 직원은 요금을 징수할 수 없지만 고객에게 다음 영업일 오전 9 시 전에 요금고지 부서에 연락하도록 지시합니다.

(공실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이전 계정이 폐쇄되어 수도공급이 중단되고 그 곳에서 계속 수도공급을 받으려면 새 고객이 새 계정을 설정해야 하고 시는 공급시작 요청을 받지 못한 경우, 새로운 고객은 정규 업무 시간 후에 수도공급 재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규 업무 시간 이후에 해당 서비스가 복원된 경우, 고객은 업무 시간 후의 복원 비용을 면제받으려면 다음 영업일에 요금고지 부서에 연락하여 수도공급계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CalWORKs, CalFresh, 일반 지원, Medi-Cal, 보조 보안 소득/주 보충 보조 프로그램 또는 여성, 유아 및 어린이를 위한 캘리포니아 특별 보조 영양 프로그램, PG & E CARE 를 현재 받고 있거나 연간 소득이 연방 빈곤 수준의 200 퍼센트 미만인 고객의 경우, 업무시간 후 복원료는 \$ 150 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12. 부도 수표 처분 통지:

수도 요금 또는 기타 요금으로 납부했으나 반환된 수표를 받는 순간 시는 계정이 연체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정이 이미 60 일 이상 연체된 경우, 시는 반환된 수표를 문에 걸어 두어 고객에게 알리기 위해 합리적이고 성실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고 반환된 수표로 인한 48 시간 후 수도공급 중단 통지서를 만들 것입니다. 반환된 수표금액과 반환수표 수수료가 중단통지에 명시된 날짜 이전에 납부되지



## 공과금 요금고지 정책

주제/제목 :	정책 번호:	승인일:
연체에 대한 주거용 공급 중단 정책		

않으면 수도 공급이 중단됩니다. 반환된 수표금액을 다시 입금하고 반환수표 수수료를 지불하기 위해 납부된 모든 금액은 현금, 신용 카드 또는 인증된 자금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계정이 60 일 이상 연체되지 않은 경우 직원은 고객에게 반환된 수표와 계좌의 연체 상태를 통지해야 하지만 수도공급을 중단하기 전에 이 정책의 섹션 4 조 및 섹션 5 조의 고객 통지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7 조에 따라 기존의 분할납부 계획이 있는 계정의 납부를 위해 발행된 부도 수표는 공급중단 전에 7 조의 통지 요건을 따라야 하며 부도 수표에 대한 해당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 13. 이전의 공급중단에 대한 수표 부도 :

고객이 이전에 연체로 인해 공급이 중단된 수도공급을 복원하기 위해 부도수표를 보내고 시가 공급을 재개한 경우, 시는 추가 통지없이 즉각 공급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연체로 인해 중단된 공급을 복원하기 위해 부도 수표를 발행하는 모든 고객은 납부수표의 반환일로부터 12 개월 동안 향후 공급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현금, 신용 카드 또는 인증된 자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 14. 이의제기 대상 고지서 :

고객이 수도 요금고지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그 사건을 등록하려면 공공 요금 고지서 이의제기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의 제기가 진행되는 동안 시는 연체로 인해 수도공급을 중단하지 않습니다.